

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편성위원회 규정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편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의 연구 개발
- ②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
- ③ 기타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 편성과 관련된 사항

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전공심화과정 운영 학과에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전공심화과정 운영 학과장으로 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과 교수 및 관련 산업체 임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, 산업체 임직원의 구성비를 1/2이상으로 한다.

제4조 (위원장의 직무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 (위원의 임기)

-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6조 (위원회의 운영)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1.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
 2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
 3.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제7조 (수당 등)

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 (운영세칙)

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